

관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2024.01.01 기준

문 1) 『관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이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인 관세사(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이 전문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u>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 3 자에게 직접적인 손해</u>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문 2)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 ▶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판결액, 최종합의 및 화해액이 해당합니다. <u>단, 징벌적손해, 벌과금,</u> 과태료, 서비스 수수료 반환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에는 변호사 비용, 전문조사인(회계사 등)비용, 소송비용, 중 재나 화해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대위권 보전비용, 기타 보험사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문 3) 보험가입 전 업무의 담보여부 및 『고지의무』

▶ 이 보험은 보험가입 전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나 가입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4) 『사고공동부담제도 15%, 30%조건』이란 무엇입니까?

- ▶ 이 조건은 보험사고 접수 후 확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u>피보험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가입신청서의 CASE B 조건 선택 시 15%를</u> 부담하고 85%를 보상, CASE C 선택 시 30%를 부담하고 70%를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받습니다.
 - 예) CASE B 공동부담비율 15% 조건, 보상한도 5 천만원(1 사고당/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3 백만원 조건 가입 후 보험사고 접수되고 손해액이 2 천만원으로 확정된 경우지급보험금은?
 - → 손해액 2 천만원에서 자기부담금 3 백만원 공제한 1,700 만원 중 피보험자의 부담 비율 15%인 255 만원을 제외한 1,445 만원이 지급보험금임

문 5) 『배상청구기준』 증권과 『소급담보일』 이란 무엇입니까?

▶ 배상청구기준증권이란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의 <u>보험기간 중에 제 3 자(의뢰인 포함)</u> 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증권입니다.



즉,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의 업무로 인하여 보험종료일 사이에 발생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소급담보일이란 통상 최초 보험가입일을 의미합니다.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는 보험가입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라도 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계속적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배상청구 시점의 보험조건으로 보상처리 됩니다.

문 6) 소급담보일이 2022년 7월 20일이고 수임일은 2022년 5월 1일이며 업무 수행일이 2022년 9월 1일인 경우, 관세사의 과실로 인하여 수행업무에 하자가 있어 의뢰인이 손해를 보아 배상청구를 했다면 보상이 됩니까?

▶ 배상청구기준증권이 적용되고 있는 관세사배상책임보험에서 업무 수행일이 소급담보일자 이후이고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경우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사건의 수임일은 소급담보일 이전이지만 업무 수행일이 소급담보일보다 이후이므로 보상됩니다.

문 7)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 8) 『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 <u>보상한도액이란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u>을 뜻하며 보상 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보상한도는 1 청구당 / 연간총한도액으로 나누어지며 1 청구당 한도는 1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이고, 연간총한도는 보험기간 1년 동안 보상 받을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 ➤ <u>자기부담금이란</u>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액 차감 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매 사고당 적용됩니다.

문 9) 『하나의 사고』란 무엇을 말합니까?

➤ <u>동일회사, 동일물품 통관 시 발생한 동일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사고들은 기간에 관계 없이 하나의 사고로 처리</u>됩니다. 즉, 동일한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원인의 과실이 반복되어 행해졌다면 하나의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시 1 청구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문 10) 청구당 보상한도 5 천만원 초과 가입이 가능합니까?

➤ 단체 보험상의 청구당 보상한도인 5 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을 희망하실 때에는 설문서를 작성하여 개별 보험료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사무소 규모에 맞게 설정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안내까지 약 7 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 11) 가입 기간에 따라 무사고 할인이 적용됩니까?

무사고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갱신자에 한함)

무사고기간	1년 이하	2년 ~ 5년	6년 ~ 10년	11년~14년	15년 이상
할인율(%)	미적용	5%	7%	10%	15%

문 12) 보험금 수령 후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까?

수령하신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3년 할증이 적용됩니다. (2024년 현재)

보험금수령규모	1년차	2년차	3년차
5백만원 이하	50%	미적용	미적용
5백만원초과~1천만원이하	80%	50%	미적용
1천만원초과~2천만원이하	150%	80%	50%
2천만원 초과	250%	150%	80%

할증기간 중 추가적인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차년도 할증 적용은 기존 적용 할증율과 비교하여 높은 할증율을 적용 합니다.(3년간 순차 적용)

문 13)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가. 피보험자의 악의적 또는 사기적 부정행위
 - 나. 전문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 다. 중상, 비방 또는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 라.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기타 투자관련 자문 업무 등
 - 마. 피보험자의 지불불능 및 파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 바.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단, 갱신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이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상함
 - 사. 계약상 가중책임. 단, 법률상 배상책임은 담보함
 - 아. 결과적 책임(간접손해)
 - 자.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문 14) 계약상 가중책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만을 말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하여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법률규정상의 배상책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계약상의 가중책임이라고 합니다.

문 15)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고 예상 시 보험사에 즉시 서면 통보)

➤ 피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서면에 의한 사고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접수된 경우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접수되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4 주가 소요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톤코리아는 협상권을 가진 보험중개사로서 계약자를 대변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 및 사실관계의 판단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 16)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보험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는 동일 보험조건으로 모든 관세사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한도는 각 관세사의 1인당 한도가 아니며 보험가입 신청한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1청구당 한도, 연간총한도로 적용되어 보상됩니다. 단, 개업신고 시 관세사법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만 수행하는 관세사는 보험조건을 달리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17)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합동사무소, 법인 자체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한도는 각 관세사의 1인당 한도가 아니라 합동사무소, 법인의 1청구당 한도, 연간총한도로 적용되어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A 관세법인에 5명의 관세사가 보상한도액 1천만원/5천만원(1청구당/연간총한도), 자기부담금 3백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관세사 2인이 관여한 업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이 2천만원으로 확정된 경우, 2천만원에서 자기부담금 3백만원을 공제한 금액 중 법인의 1청구당 한도인 1천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관세사 1인당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문 18) 사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담보 특별약관은 무슨 내용입니까?

▶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은 관세사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악의적 및 사기적 부정행위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특별약관(Dishonesty Extension)을 선택 가입 시 피보험자인 관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특별약관을 선택 가입할 시 담보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관세사 본인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는 제외됩니다. (가입 사무원수에 따라 보험료 산정)

문 19) 록톤코리아(LOCKTON KORE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독립 단체인 보험중개사로서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 또는 주선 하는 등 보험계약체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계약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통보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록톤코리아는 관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배상책임보험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어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상품안내이며 관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보상은 청약서상의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 이 보험의 보상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약관은 록톤코리아 '전문인보험 가입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 로그인 > 알림마당 > 자료실 또는 한국관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 관세사전용 > 회원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관세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록톤코리아 '전문인보험 가입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cktonpi.com)에서 진행되니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 회원은 록톤코리아에서 아이디 등을 부여하니 먼저 록톤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신규 가입 원하시는 개인 관세사는 관세사등록증을 먼저 록톤으로 보내 관세사회원 확인 후 가입 진행되니 관세사등록증을 팩스 송부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 및 상담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전문인보험팀 https://www.locktonpi.com	이순옥 상무 윤 원 이사 윤자영 부장 박순정 과장	TEL: 02)2011-0300 FAX: 0503-8379-2008
		이채은 사원	